### [서식 예]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



# (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)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◈◈수산업협동조합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조합장 ◈◈◈(소관: ◈◈어촌계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청구채권의 표시 : 금 ㅇㅇㅇㅇ아

1. 금 ㅇㅇㅇㅇㅇ원

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 결정본에 기한 금액

2. 금 0000원

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3. 금 ○○○원(집행비용)

내역: 금 ○○○원(신청서 첩부인지대)

금 〇〇〇원(송달료)

금 ○○○원(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)

4. 합계 금 ○○○○○원(1+2+3)

##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

# 신 청 취 지

- 1.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의 기집 행선고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신항만 개발로 인하여 지급 받을 어민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3.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금 ○○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채권가압류집행을 20○○. ○. ○. 하였습니다.
- 4.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, 채권자는 위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변제 받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여 전부를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#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

1. 가집행선고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

1.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통

1. 가압류결정문 1통

1. 가압류결정송달증명원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제3채무자) 1통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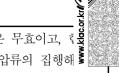
#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

# 금 ㅇㅇㅇ원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항만 개발로 인하여 지급 받을 어민 보상금 가운데 위 청구금액. 끝.

	대한법률구조공단	
4	<b>/</b>	
or.kr#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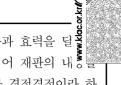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29조기 <b>자</b>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		
및 기간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		
비 용	・인지액: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전부 2,000원) ・송달료: 당사자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2회분				
기 타	·전부명령은 압류명령 수도 있음.	신청과 동시에	할 수도 있고, 사후에 신청할		



-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 ▮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님(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 19373 판결).
- ·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하고,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 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함(대법원 2001, 12, 24, 선 고 2001다62640 판결).
- ·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 라 권면액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

#### 참고판례요지

- ·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 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,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 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,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(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)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 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(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).
- 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 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 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,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 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68839 판결).



**오른 1** 대한법률구조공단

- ·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꽃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 \$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.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 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 효라고 할 수는 없음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- •채무명의(집행권원)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집행 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,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,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 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,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 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,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임(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다41602 판결).
- ·민법 제370조,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 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 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 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,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 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 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,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,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 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 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,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 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 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음(대법원 2002, 10, 11, 선고 2002다33137 판결).
- ·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, 그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,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 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(대법원 2002, 9, 24, 선고 2002다27910 판결).
- ·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,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1699 판결).
- ·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, 청 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함.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 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,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(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22788 판결).

### 참고판례요지

- ※ 제출법원(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)
 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  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